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6 일

여 수 시 장 조영민



여수시 조례 제2150호

붙임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50호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비고 1. 내용 중 “여수시의회 소재지로부터 여수시내에서의 여
 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행

五五

국내여비 지급범위(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지 급 기 준 액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운 공 임	자 동 차 운 임	현 지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 의 의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50,000 그 밖의 지역 130,000)	25,000

비교

1. 여수시의회 소재지로 부터 여수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2.~6.(생략)

개 정 안

〔註〕

국내여비 지급범위(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지 급 기 준	철 운 도 임	선 운 박 임	항 운 공 임	자 동 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50,000 그 밖의 지역 130,000)	25,000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2.~6.(생략)